

김중연 선생님 「공인노무사 원포인트 민법」
제2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2023-02-06)

P.60 내용수정

*(기존)

2) 입 목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관습법상 공시방법인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다. 특히 수목의 집단 중에 입목법상 등기를 갖춘 경우를 입목이라고 하는 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그러나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수정)

2) 입 목

(가)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관습법상 공시방법인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나) 특히 수목의 집단 중에 입목법상 등기를 갖춘 경우를 입목이라고 하는 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명인방법과 달리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P.238 오탁자 수정

*(기존)

③ 공유자인 공동점유자들이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동점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판 1980.7.22. 80다649).

*(수정)

③ 공유자인 공동점유자들이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동점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판 1980.7.22. 80다649).

P. 306 오탁자 수정

*(기존)

① 가해자의 상계 가능성

(나) 제496조는 채무자의 상계권을 ... 즉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채무가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수정)

① 가해자의 상계 가능성

(나) 제496조는 채무자의 상계권을 ... 즉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P. 332 오탁자 수정

*(기존)

1)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대판 2006.5.25. 2003다45267).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대판 2013.9.13. 2011다56033).

*(수정)

1)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대판 2006.5.25. 2003다45267).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수익자)가 인수인(낙약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대판 2013.9.13. 2011다56033).

P. 332 오탁자 수정

*(기존)

2) 귀속권리의 확정

만일 계약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킨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판 2022.1.14. 2021다271183).

*(수정)

2) 귀속권리의 확정

만일 계약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킨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판 2022.1.14. 2021다271183).

P. 353 내용추가

*(기존)

3. 사인증여

㉠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이에 대해서는 단독행위적 성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제562조).
 ㉡ 따라서 유언능력(제1061조, 제1063조), 유언방식(제1065조 이하) 및 유언의 철회(제1108조 이하)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9.14. 2000다66430·66447).

판례 정리 포괄적 사인증여에 대한 민법 제1078조의 준용 여부
 민법 제1078조(포괄적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6.4.12. 94다37714·37721).

*(수정)

3. 사인증여

㉠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이에 대해서는 단독행위적 성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제562조). **따라서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1.9.14. 2000다66430·66447).

판례 정리 포괄적 사인증여에 대한 민법 제1078조의 준용 여부
 민법 제1078조(포괄적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6.4.12. 94다37714·37721).

(나) 그러나 최근 판례가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하였다(대판 2022.7.28. 2017다245330).

P. 378 내용추가

*(기준)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수정)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P. 404 제목수정

*(기준)

1. 해제의 요건
2. 해제의 효과

*(수정)

1. 도급인의 자유로운 해제
2.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P. 411 판례추가

*(기준)

(1) 보수지급의무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93.11.12. 93다36882).

*(수정)

(1) 보수지급의무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93.11.12. 93다36882).

판례 정리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의 감액 여부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8.5.17.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P. 462 내용추가

*(기준)

(1) 미성년자의 경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2.11. 2009다79897).

*(수정)

(1) 미성년자의 경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2.11. 2009다79897). **다만, 제766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실령 알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